#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681 발의연월일: 2024. 10. 14.

발 의 자:이인선·백종헌·신성범

최수진 • 조지연 • 김성원

최은석・박성민・김 건

박충권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과 조광권에 관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공제 제도는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만 지원하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광업권 및 조광권 취득 시기를 고려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비에 대한 추가 세제 혜택과 자원안보를 위한 해외자원개발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공제율 상향 조정이 필요함.

또한, 투자 및 출자일로부터 5년 내 투자자산이나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세액공제 반환 및 가산세 납부 규정의 획일화로 상업 생산

에 이르지 못하고 반납 또는 종료되는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업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공제 대상 투자로 포함하고, 공제율을 100분의 5(중견기업은 100분의 7, 중소기업은 100분의 10)로 상향 및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는 한편, 사업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조광권, 광업권이 반납되는 경우 세액공제 반환및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15).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 33년 12월 31일"로, "3에"를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해외자원의 조사(탐사)· 개발·생산 단계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2조에 따른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 제104조의15제1항제2호 중 "광업권 또는"을 "광업권과"로, "위한"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또는 해외자원의 조사(탐사)·개발·생산 단계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제2조에 따른 조사(탐사) 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기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2항제1호의 사유로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	대한 과세특례) ①
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	
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	
여 2024년 1월 1일부터 <u>2026년</u>	<u>2033년</u>
<u>12월 31일</u> 까지 다음 각 호의	<u>12월 31일</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	
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	
의 <u>3에</u>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u>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u>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	100분의 10)에
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	
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	
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	
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	
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ユ
러하지	아니하다.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

 는 투자

 2.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취득

 하기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출자

3. (생략)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 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 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 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1. 광업권과 조광권을 취득하는 투자 또는 해외자원의 조사(탐사)·개발·생산 단계에서 기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등자기준」제2조에 따른 조사(탐사)사업비, 개발사업비, 생산사업비를 지출하는 투자

3. (현행과 같음)

②	

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 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 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 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 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 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 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 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 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 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 는 경우 <단서 신설>

(생략)
 ③·④ (생략)

<u>.</u>
1
경우. 다만, 「해외자원개
발 사업법 시행령」 제11조
의3제2항제1호의 사유로 광
업권 또는 조광권이 종료되
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